

■ **업무내용**

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

■ **등록기준**

**1. 자본금**

법인	개인
8.5억원 이상	17억원 이상

**2. 기술능력**

기술자격
<p>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·재무, 건설기획,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) 11명 이상</p> <p>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</p> <p>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</p>
<p>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</p>

**3. 공제조합**

2024.08.08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등급 이상	D등급
토목건축공사업	1,551,800원	8.5억원	200좌 (310,360,000원)	225좌 (349,155,000원)
※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				

**4. 시설·장비**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**신규등록 소요기간**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